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5. 26. ~ 5. 3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31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계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78호
----------	--------

발의연월일 : 2021. 5. 25.

발의자 : 박계수·서정진·이복남
박혜정·남정옥·이현재의원

1. 제정이유

-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성(性)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및 제5조)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및 제7조)
- 2차 피해방지(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순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 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79호
----------	--------

발의연월일 : 2021. 5. 25.

발 의 자 : 김미애 · 장숙희
이현재 · 이복남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안 제5조)
-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안 제6조 ~ 안 제8조)
-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 (안 제9조)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안 제10조)
- 교육 및 활동지원 (안 제11조 ~ 안 제12조)
-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3조 ~ 안 제19조)
- 비밀준수 (안 제2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다. 타 지자체 입법례 : 전국 15개 지자체(광역·특별 6, 기초 9 / 전남 : 0)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순천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 보장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청소년·여성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노동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
2.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
3. 시 노동 관련 조사·연구, 교육, 상담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 및 법률상담 지원, 정보 제공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지원
4.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자 권익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① 시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생활안정,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재, 영상 등의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시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해·재난 상황에는 영상 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노동이 존중되는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사람으로 노동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80호
----------	--------

발의연월일 : 2021. 5. 25.

발 의 자 : 나안수 · 박혜정

서정진 · 이복남

최병배 · 김병권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미술대전(시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전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시전사무국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1조)
- 공유재산 사용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순천시장” 을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무국) ① 시전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전사무국(이하 “사무국”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사무국의 소재지는 순천시 관내로 하며,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전에 관한 기획 및 추진
2. 시전 발전을 위한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전과 관련된 보조금의 집행 및 결산
4. 그 밖에 시전과 관련된 업무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4호,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제2항,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제19조(종전의 제17조) 제3항, 제23조(종전의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종전의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8조(종전의 제26조) 제3호 중 “미술대전”, “순천미술대전”, “순천시미술대전” 을 각각 “시전”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조직) ① (생략) ② 대회장은 순천시장이 되며 미술대전을 대표한다. ③ - ④ (생략)</p> <p>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미술대전 초대작가 5. 미술대전 추천작가 6. (생략) ③ (생략)</p> <p>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생략) 1. (생략) 2. 미술대전 일정 및 전시, 공모작품 섭외 등 미술대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생략) ② 운영위원장은 미술대전 운영의 전반에 대해 관리 및 책임을 진다.</p> <p>제9조(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은 본 미술대전 초대작가, 본 미술대전 이상의 품격과 위상을 가진 각종 공모전에서 운영 및 심사위원, 초대작가를 역임한자, 미술대전 관련분야 대학교수, 국제적인 미술대회나 국제규모의 아트페어 큐레이터를 역임한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순천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 시전-----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시전 ----- 5. 시전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시전 ----- 시 전 ----- 3. (현행과 같음) ② ----- 시전 ----- -----</p> <p>제9조(심사위원 자격)----- 시전 ---- ----- 시전 ----- ----- ----- 시전 ----- ----- -----</p> <p>제11조(사무국) ① 시전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전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한국미술협회순천시부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사무국의 소재지는 순천시 관내로 하며,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전에 관한 기획 및 추진 2. 시전 발전을 위한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전과 관련된 보조금의 집행 및 결산 4. 그 밖에 시전과 관련된 업무</p> <p>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공유재산</p>

제11조 ~ 제16조 (생략)

제17조(수상작품 선정) ① - ② (생략)

③ **미술대전** 활성화를 위해 출품작품 중 특별상을 선정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8조 ~ 제20조 (생략)

제21조(추천작가) ① 시전 추천작가라 함은 **순천미술대전**에 출품하여 총 12점의 점수를 얻은 자로 그 점수는 아래와 같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22조(초대작가) ① (생략)

1. 추천작가로서 계속 5회 이상 **미술대전**에 출품한 자. 단 중도 1회 이상 불참시 3회 연장하여 총 8회 이상 **미술대전**에 출품한 자

2. (생략)

② (생략)

제23조 ~ 제25조 (생략)

제26조(보고 및 기록보존) (생략)

1. -2. (생략)

3. **순천시미술대전** 추천(초대)작가 지정서 교부대장(별지 제9호 서식)

제27조 (생략)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 제18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9조(수상작품 선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전**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23조(추천작가) ① ----- **시전**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초대작가) ① (현행과 같음)

1. ----- **시전**-----

----- **시전**-----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 ~ 제27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28조(보고 및 기록보존)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시전** -----

제29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시행 2017. 4. 2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732호, 2017. 4. 21.,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예술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미술문화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미술대전(이하“시전”이라 한다)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① 시전은 매년 7월부터 11월중에 개최하며 그 내용을 개최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의 규격
2. 작품의 출품수 및 출품료
3.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
4. 작품의 전시기간, 장소 및 관람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주최 및 주관) ① 시전은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가 주관한다.

② 시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시전의 조직으로 대회장, 운영위원장, 간사를 둔다.

② 대회장은 순천시장이 되며 미술대전을 대표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장이 맡으며, 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한국미술협회순천지부 사무국장이 되며 대회장의 명을 받아 시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대회장은 시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매년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회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2. 당해 시전 관련 주무 국·소장
3. 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지부장
4. 미술대전 초대작가
5. 미술대전 추천작가
6. 심사위원 역임자 중 부문별 각 1명.

③ 운영위원회(심사위원회 포함)는 그 해의 시전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더불어 소속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미술대전 일정 및 전시, 공모작품 섭외 등 미술대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전에 관하여 대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② 운영위원장은 미술대전 운영의 전반에 대해 관리 및 책임을 진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회장이 위촉한다.

- ② 각 부문별 심사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각 부문 심사위원회는 호선으로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 ④ 각 부문별 분과위원장중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결정하고 심사업무를 총괄한다.
- ⑤ 운영위원은 당해 연도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출품작품들을 심사하여 수상작품을 선정
2. 심사위원회 운영을 비롯하여 심사에 관련된 세부사항 결정
3. 기타 대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은 본 미술대전 초대작가, 본 미술대전 이상의 품격과 위상을 가진 각종 공모전에서 운영 및 심사위원, 초대작가를 역임한자, 미술대전 관련분야 대학교수, 국제적인 미술대회나 국제규모의 아트페어 큐레이터를 역임한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

제10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는 각 부문별로 분과위원장 책임 하에 진행되며 그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② 보고를 받은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③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운영위원장은 대회장에게 보고하며 대회장은 이를 즉시 공개 발표한다.

제11조(참가부문) ① 시전에 참가부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화
2. 서양화
3. 수채화
4. 문인화
5. 서예
6. 공예
7. 서각
8. 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포함)
9. 판화
10. 사진
11. 조각(설치미술 포함)

- ② 운영위원장은 필요 시 참가부문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출품인의 자격) ① 시전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② 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

제13조(작품의 규격) ① 시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규격은 시전 개최 공고 전까지 대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작품의 규격을 정한 경우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전 개최 공고 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출품원서) ① 시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작품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품원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에는 매점마다 명제, 제작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품표를 붙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와 출품작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출품료) ① 대회장은 시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출품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전 개최 공고를 할 때 함께 공고한다.

제16조(반출금지) 접수된 출품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할 작품은 회기종료 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한다.

제17조(수상작품 선정) ① 출품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을 입선작품으로 하고 입선작품 중에서 최우수작품을 특선작품으로 한다.

② 특선작품 중에서 부문별로 대상, 우수상을 각각 1점씩 선정한다. 그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종합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출품작이 적거나 작품 수준이 떨어진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미술대전 활성화를 위해 출품작품 중 특별상을 선정 할 수 있다.

④ 입·특선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특선장을 수여하고,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상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⑤ 종합대상작품과 각 부문 대상작품, 우수상 작품은 순천시에 귀속시키며 귀속된 작품은 시의 물품으로 관리한다.

제18조(전시작품) ① 시전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특)선한 작품
2.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의 작품
3.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의 작품

②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작품의 전시는 1인당 1점에 한한다.

제19조(전시위치) 시전에 전시하는 작품의 전시위치 및 배열은 운영위원장이 정하며, 출품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옥외전시장을 활용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0조(낙선작품의 반품) ① 출품인은 그 작품이 시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낙선될

때에는 그 심사결과의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

② 대회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추천작가) ① 시전 추천작가라 함은 순천미술대전에 출품하여 총 12점의 점수를 얻은 자로 그 점수는 아래와 같다.

1. 종합대상 8점
2. 대상 6점
3. 우수상 및 특별상(후원자 매입상) 5점
4. 특선 3점, 입선 1점

② 추천작가의 지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초대작가) ① 시전 초대작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회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추천작가로서 계속 5회 이상 미술대전에 출품한 자. 단 중도 1회 이상 불참시 3회 연장하여 총 8회 이상 미술대전에 출품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전국규모 미술·건축·사진·공예·서예대전(국전포함)에서 3회 이상 특선한자 또는 7회 이상 입선한자

② 초대작가의 지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23조(관람 및 질서) ① 시전에 수상 작품은 공개 전시회를 갖는다.

② 관람시간은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회장이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

③ 대회장은 전시장의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관람료) ① 대회장은 전시작품의 관람인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관람료의 징수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시전 개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기록보존) 대회장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영구히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명단(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2. 수상자 명단(별지 제8호 서식)
3. 순천시미술대전 추천(초대)작가 지정서 교부 대장(별지 제9호 서식)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박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81호
----------	--------

발의연월일 : 2021. 5. 25.

발 의 자 : 박혜정 · 나안수
김병권 의원

1. 제정이유

-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6.2일’ 이 ‘유기’ 로 발음되는 점에 착안하여 6.2일을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로 제정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유실·유기 방지의 날 (안 제2조)
- 사업 (안 제3조)
- 사업주최(안 제4조)
- 지원 (안 제5조)
- 포상 (안 제6조)
- 시행규칙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등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다. 타 지자체 입법례 : 전국 최초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실·유기 방지의 날)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이하 ‘유실·유기 방지의 날’ 이라 한다)은 6월 2일로 한다.

제3조(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유실·유기 방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기념·홍보 및 문화 행사
2. 반려동물 등록 안내 행사
3. 그 밖에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최) ① 모든 사업은 시장이 주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사업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사업을 주관할 경우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및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6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자 : 2021. 5. 24.

1. 제정이유

-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정립
-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서 생태적 삶의 실천을 권장

2. 주요내용

- 제1조 : 조례 제정의 목적
- 제2조~제4조 :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 제5조~제6조 : 생태도시 종합계획, 연도별 평가
- 제7조~제9조 : 생태도시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 제10조~제12조 : 공동위원장 등 선출, 위원의 책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제13조~제15조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 제16조~제21조 : 감사, 사무국, 위원회 회의, 간사, 수당지급, 운영세칙
- 제22조 : 생태도시 실천을 위한 행정의 역할
- 제23조~제25조 : 생태도시 실천 사업, 녹색가정 육성, 실천사업 공모
- 제26조~제27조 : 생태도시 실천 활동을 위한 지원 및 재원 조달
- 제28조~제30조 : 생태환경 교육 실시 및 강사 육성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4. ~ 4. 1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29.(여성가족과-703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2. 25.(기획예산실-295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5.(기획예산실-295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4.(순천시 공고 제2021-744호)

추진경위

- 생태도시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회 청구(545명) : 2020. 2. 19.
-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만장일치 의결 : 2020. 2. 28
- 생태도시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2020. 5. 12.
- 생태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 위원회 출범 : 2020. 5. 30
- 도시락 파티 : 2020. 6. ~ 2020. 10
 - 생태조례 조례안작성 등 구체적 논의를 위한 소규모 그룹모임 매주 실시
- 시민 토론회 개최 : 2020. 7. 31
 -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사업과 조직 구상안 등을 공유(50명, 박재원 의원 참석)
- 생태도시 조례(안) 완성 : 2020. 11
 - 도시락 파티,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생태도시 조례추진 위원회에서 생태도시 조례(안) 완성 →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 생태도시 조례제정 청원 서명활동 추진 : 2020. 11. 18. ~ 2021. 1. 31.
- 생태도시 조례 입법청원 서명부 전달 : 2021. 2. 17.
 - 조례안 및 생태도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5,540명 순천시민의 입법청원 서명부 순천시(시장)와 순천시의회(시의장)에 각각 전달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지키고,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하여 순천시 행정의 역할과 순천시민의 생태환경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지닌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에 부합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란 사람과 자연환경 및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말한다.
4. “생태도시 관련사업“이란 생태도시가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민소통·도시계획·에너지·녹지·교통 등 각 분야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말한다.
6. “사업 주체“란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실천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7. “녹색가정”이란 순천시의 생태도시 만들기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를 말한다.
8.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태도시 순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한다.

1. 도시계획사업은 도시 전체의 생태·문화·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며 생태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
2. 시민은 지역사회와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환경실천 활동에 참여한다.
3. 생태환경교육은 생태도시를 실현하는 근간으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순천시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부서별로 추진항목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생태도시 종합계획 이행을 위하여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녹지, 도시 관리 등과 관련된 법규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환경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생태도시 종합계획) ① 시장은 순천시 생태도시 종합계획(이하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시계획 수립 정비 연도와 연계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생태도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에서 제시된 사항 중 생태·환경·교통·에너지 분야
2. 공무원과 시민 및 유아 청소년 등 각 계층 대상 환경교육 운영
3. 순천만과 주요 숲·하천의 생물종다양성 관리 및 운영
4. 순천시 주변 대기환경 개선
5. 에너지 저감 및 자립화 계획

6. 생태도시 관련 로컬브랜드 육성 계획
7. 생태도시 계획과 부합하도록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비 사항
8. 생태도시를 위한 시민 실천 사항
9. 기타 생태도시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연도별 평가) ① 시장은 자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지역 환경과 조화로운 경제·문화·사회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에서 수립·제시된 이행 과제 중 생태·환경·교통·에너지 분야를 매년 평가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또는 시민과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생태도시 위원회

제7조(설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에 필요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생태도시 실천 시민참여 공모사업 심의
4. 환경행정 현안 공론화 제기 및 수행
5. 그밖에 생태도시 구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시장, 순천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환경업무담당국장, 도시건설업무담당국장, 기획업무담당과장, 자치행정업무담당과장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3. 생태도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10인

4. 순천시 주민자치회 회장이 추천하는 읍면동별 각 1인
 5. 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20인
 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인 40인
-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위원장 등) 위원회가 호선한 3인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두며 상임 위원장은 민간인 공동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위촉된 위원은 생태도시의 필요성과 과제를 인식하는 생태환경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촉을 원한 경우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며 제8조제3호의 시민참여 공모사업을 심사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의는 분과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 특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청소년 위원회) ①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생태도시 청소년 위원회(이하 “청소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위원회는 순천시 거주 청소년들로 구성한다.

③ 청소년 위원회는 위원회에 10인의 위원을 선출하여 참여한다.

④ 청소년 위원회의 제반 활동은 필요 시 민간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되, 감사는 생태도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의 일반 업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매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생태도시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무국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상임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도시 조례”라 한다) 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생태도시 실천

제22조(행정의 역할) ① 각종 개발행위 및 민원 허가 사항과 관련 대규모 집단 민원이나 생태도시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부서는 필요시 생태도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② 순천시에서 행해지는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는 생태도시 조례 담당 부서를 통하여 협의 요청 및 대외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순천만 등 생태계 보호지역이거나 환경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도시계획 사업 또는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을 계획할 때는 관련된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과업 지시서에 명시할 수 있다.

제23조(생태도시 실천사업) ① 위원회는 매년도별 중점 환경실천 사업을 선정하여 범시민 실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범시민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직능별 기관 단체의 참여사업과 읍·면·동별 지역 사업을 구분하여 공개 모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방식 이외에 특정 사업 분야에 전문성과 지역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녹색가정) ① 위원회는 가정으로부터의 자발적 녹색생활운동을 정착 확산하기 위하여 생태도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녹색가정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 생활운동의 확산을 위해 정기적인 생태환경 교육 및 자원 봉사 과정을 개설하여 이수자에게 녹색가정의 자격을 부여한다.

③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 활동이 우수한 녹색가정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표식의 부여 또는 순천시 관할 관광지 무료 관람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공모 및 결정) ① 생태도시 실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전까지 제28조에 따른 공모사업 참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는 참여자 컨설팅 과정을 마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제26조(지원) ① 시장은 생태도시 실천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재원 조달방법 및 규모)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전전년도 수입결정액의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장 생태 교육

제28조(생태환경 교육 등)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태도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

1. 생태도시 위원회 위원 교육
2. 녹색가정 육성 교육
3. 공모사업 참여자 교육 및 컨설팅
4. 순천시 공무원 교육
5. 그 밖에 유아·청소년·시민 대상 기관 단체 방문 교육 등

제29조(환경교육 강사 육성 등) 위원회는 다수의 교육 강사가 필요한 제28조 제5호의 기관 단체 방문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교육 방문 강사를 육성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26조(지원) ① 시장은 생태도시 실천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재원 조달방법 및 규모)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전전년도 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만국가정원 2019년 수입결정액 8,500,104천원 / 2020년 수입결정액 9,034,360천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순천만국가정원 수입액 감소 고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330,000	-340,000	-360,000	-210,000	-210,000	-210,000
세입(a)	-	-	-	-	-	-
세출(b)	1,330,000	340,000	360,000	210,000	210,000	21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1,330,000	340,000	360,000	210,000	210,000	21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1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340,000
세입	소계	-	
세출	소계		340,000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기간제 인건비 : 28,000천원 • 위원회 운영 등 : 10,000천원 • 청소년 위원회 육성 및 운영 등 : 10,000천원 	48,000
	생태도시 실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시민 참여사업 : 200,000천원 - 직능별 기간단체 참여사업 : 80,000천원 - 읍면동별 참여사업 : 120,000천원 	200,000
	녹색가정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가정 육성 : 22,000천원 	22,000
	생태도시 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도시 실천을 위한 공모사업 : 20,000천원 	20,000
	생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교육(위원, 녹색가정, 공모사업 참여자, 공무원) : 30,000천원 	30,000
	환경교육 강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 강사 육성 : 20,000천원 	20,000

○ 2022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360,000
세입	소계	-	
세출	소계		360,000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기간제 인건비 : 28,000천원 • 위원회 운영 등 : 10,000천원 • 청소년 위원회 육성 및 운영 등 : 10,000천원 	48,000
	생태도시 실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시민 참여사업 : 200,000천원 - 직능별 기간단체 참여사업 : 80,000천원 - 읍면동별 참여사업 : 120,000천원 	200,000
	녹색가정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가정 육성 : 37,000천원 	37,000
	생태도시 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도시 실천을 위한 공모사업 : 25,000천원 	25,000
	생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교육(위원, 녹색가정, 공모사업 참여자, 공무원) : 30,000천원 	30,000
	환경교육 강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 강사 육성 : 20,000천원 	20,000

○ 2023년 이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10,000
세입	소계	-	
세출	소계		210,000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기간제 인건비 : 28,000천원 • 위원회 운영 등 : 10,000천원 • 청소년 위원회 육성 및 운영 등 : 5,000천원 	43,000
	생태도시 실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시민 참여사업 : 120,000천원 - 읍면동별 참여사업 : 120,000천원 	120,000
	녹색가정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가정 육성 : 15,000천원 	15,000
	생태도시 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도시 실천을 위한 공모사업 : 10,000천원 	10,000
	생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교육(위원, 녹색가정, 공모사업 참여자, 공무원) : 12,000천원 	12,000
	환경교육 강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 강사 육성 : 10,000천원 	1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기획예산실 실장 조태훈(☎ 749-5440)

기획팀장 황학종(☎ 749-5540)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6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자 : 2021. 5. 24.

1.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함에 따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세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 공포: 21. 1. 12 / 시행: 21. 7. 13.
- 또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의 실효성 및 청렴성 확보

2. 주요내용

- 위원의 제척·회피·기피·해임·해촉(안 제6조제6항~제9항)
-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안 제27조제4항)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안 제29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안 제33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4. ~ 4. 12.)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31.(여성가족과-715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4.(순천시 공고 제 2021-735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시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방보조금 예산의 계상)”을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순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 을 “법 제7조제2항” 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 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후단 중 “공과금” 을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1개월” 을 “2개월” 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 장부, 서류” 를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관계 장부·서류” 로, “그 사업내용” 을 “그 밖의 재산” 으로, “감독상” 을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필요 시 감독상”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2 조의9제1항” 을 “법 제2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2조의9제3항” 을 “법제21조제3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법 제21조의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8조제1항 중 “법 제60조” 를 “「지방재정법」 제60조” 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시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시에 반환하고, 시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9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9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9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순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제4조(보조대상 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계상) ① ~ ④ (생략)</p> <p><신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p> <p>-----</p> <p>-----</p> <p>-----</p> <p>-----</p> <p>-----</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시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p> <p>제4조(보조대상 사업) -----</p> <p>----- 「지방재정법」 제17조-----</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시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p>

제2장 순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법 제32조의 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법 제26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4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 32 조의9제1항의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 2개월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감독 등) ① -----

-----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관계 장부·서류 ----- 그 밖의 재산 -----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필요 시 감독상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① ----- 법 제 21조-----

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시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 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 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시에 반환하고, 시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

<신 설>

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신 설>

<신 설>

<신 설>

한다.

제32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9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9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9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6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24.

1. 개정이유

-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신규 공립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규정

2. 주요내용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어 인용 조례 개정(안 제4조)
- 어린이집 임용구비 서류 추가(안 제10조)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제출 서류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규칙 개정(안 제36조)
- 어린이집 비치 장부 및 서류 변경(안 제37조)
 - ‘시설운영일지’를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로 개정
 - ‘안전점검표’를 ‘통합안전점검표’로 개정
- 신규 공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안 별표 1)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9조 및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4. 27. ~ 5. 17.)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27.(여성가족과-928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26.(기획예산실-618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27.(순천시 공고 제2021-1044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라한다” 를 “이라 한다” 로, “별표1” 을 “별표 1” 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 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의” 를 “조례에 특별한” 으로, “조례가” 를 “조례에서”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라한다” 를 “이라 한다” 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를 “동의를 받거나 순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본 1통” 을 “사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신체검사서 1통” 을 “신체검사서”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주민등록등본
5.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6.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7.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제출 서류

제11조제3항 중 “보육교직원은는” 을 “보육교직원은” 으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입소대상” 을 “이용대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장애아의 경우는 만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어린이집은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순천시에 보고하여 그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회계의 처리) 어린이집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2호 중 “서류(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를 “서류”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총계정 원장” 을 “총계정원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명부 및 이용아동 연명부” 를 “명부” 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12. 통합안전점검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고
1	공립 풍덕어린이집	순천시 역전광장 3길 15(풍덕동)	
2	공립 저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순천시 정충사길 5(저전동)	
3	공립 선양어린이집	순천시 덕월1길 34(덕월동)	
4	공립 강청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강청길 134	
5	공립 연향어린이집	순천시 연향2로 60(연향동)	
6	공립 우석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선평길 11	
7	공립 낙안어린이집	순천시 낙안면 민속마을길 1690	
8	공립 승주어린이집	순천시 승주읍 승평길 15	
9	공립 동부종합복지관어린이집	순천시 장선배기길 18(조례동)	
10	공립 가곡참샘어린이집	순천시 고지1길 57(가곡동, 참샘마을휴먼시아)	
11	공립 상사어린이집	순천시 상사면 응령동길 56	
12	공립 신대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매안4길 34	
13	공립 오천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순천시 풍덕새길 37(풍덕동)	
14	공립 신대푸르니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2	
15	공립 선평빛찬들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선평동선길 36(선평빛찬들어아파트)	
16	공립 신대중흥7차에코누리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0(중흥에코시티7단지)	
17	공립 신대중흥8차에코둥이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중흥에코시티8단지)	
18	공립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9-14(중흥에듀힐스9단지)	
19	공립 신매곡어린이집	순천시 삼산초등길 20(매곡동, 신매곡 서한이다움)	
20	공립 용당아이편한어린이집	순천시 용당삼산로 20(용당동, e편한세상 순천 1단지)	
21	공립 신대중흥10차에듀하이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79(중흥에스클래스에듀하이10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1</u>과 같다.</p>	<p>제2조(명칭과 위치) ----- -----<u>이라 한다</u>----- ----- <u>별표 1</u>-----.</p>
<p>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집의 인사복무 및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u>법령의</u>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u>조례가</u>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u>다른 조례와의 관계</u>) ----- ----- ----- <u>조례에 특별한</u> ----- ----- <u>조례에서</u> ----- -----.</p>
<p>제4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u>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u>」 제4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회의의 <u>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em;">② ~ ⑤ (생략)</p>	<p>제4조(위탁운영) ① ----- -----<u>이라 한다</u>----- ----- ----- 「<u>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제6조----- ----- <u>동의를 받거나 순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em;">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임용구비 서류 등) 보육교직원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인사기록카드 1통</u></p> <p>2. <u>주민등록등본 1통</u></p> <p>3. <u>자격증 사본 1통</u>(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관</p>	<p>제10조(임용구비 서류 등) ----- ----- -----.</p> <p>1. <u>인사기록카드</u></p> <p>2. <u>주민등록등본</u></p> <p>3. ----- <u>사본</u>----- -----</p>

런 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4. 채용 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준용)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② (생 략)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전 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④ (생 략)

제32조(보육대상) 어린이집의 입소 대상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는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보육시간등) ① 어린이집은 매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무시간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4. ---- 신체검사서-----

5.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6.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7.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제출 서류

제11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보육교직원은 -----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육대상) ----- 이용 대상-----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장애아의 경우는 만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34조(보육시간등) ① 어린이집은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순천시에 보고하여 그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회계의 처리) 어린이집의 회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37조(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3. 시설 운영일지
4. 5. (생략)
6.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8. (생략)
9.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 명부 및 이용아동 연명부
10. 11. (생략)
12. 안전점검표
13. 14.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회계의 처리) 어린이집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장부 등의 비치) -----

-----.

1. (현행과 같음)
2. -----
-- 서류
3.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4. 5. (현행과 같음)
6. 총계정원장 -----

7. 8. (현행과 같음)
9. ----- 명부
10. 11. (현행과 같음)
12. 통합안전점검표
13. 14.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2019.03.1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연번	명 칭	위 치	비고
1	공립 순천시 풍덕어린이집	순천시 역산평장 3길 15(풍덕동)	
2	공립 순천시 처전보름나눔어린이집	순천시 정충사길 5(처전동)	
3	공립 순천시 선양어린이집	순천시 덕월길 34(덕월동)	
4	공립 순천시 연향어린이집	순천시 연향로 8(연향동)	
5	공립 순천시 강향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강향길 134	
6	공립 순천시 우주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산방길 11	
7	공립 순천시 낙안어린이집	순천시 낙안면 민축마을길 1690	
8	공립 순천시 승주어린이집	순천시 승주읍 승평길 15	
9	공립 순천시 주암어린이집	순천시 주암면 외평길 24-37	
10	공립 순천시 동부종합복지관어린이집	순천시 장안배기길 18(조례동)	
11	공립 순천시 가곡삼삼어린이집	순천시 고지길 57(가곡동)	
12	공립 순천시 상사어린이집	순천시 상사면 이천길 15	
13	공립 순천시 산대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패인길 34	
14	공립 순천시 오천보름나눔어린이집	순천시 풍덕새길 37(풍덕동)	
15	공립 순천시 산대푸른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패인로 182	
16	공립 순천시 산평빛진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산평동산길 36	
17	공립 순천시 산대중흥7차에코누리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좌이로 150	
18	공립 순천시 산대중흥5차에코누리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산대로 147	

[별표 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고
1	공립 풍덕어린이집	순천시 역산평장 3길 15(풍덕동)	
2	공립 처전보름나눔어린이집	순천시 정충사길 5(처전동)	
3	공립 선양어린이집	순천시 덕월길 34(덕월동)	
4	공립 강향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강향길 134	
5	공립 연향어린이집	순천시 연향로 8(연향동)	
6	공립 우주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산방길 11	
7	공립 낙안어린이집	순천시 낙안면 민축마을길 1690	
8	공립 승주어린이집	순천시 승주읍 승평길 15	
9	공립 동부종합복지관어린이집	순천시 장안배기길 18(조례동)	
10	공립 가곡삼삼어린이집	순천시 고지길 57(가곡동) (합동) (합동)	
11	공립 상사어린이집	순천시 상사면 응령동길 56	
12	공립 산대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패인길 34	
13	공립 오천보름나눔어린이집	순천시 풍덕새길 37(풍덕동)	
14	공립 산대푸른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패인로 182	
15	공립 산평빛진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산평동산길 36(산평빛진어린이집)	
16	공립 산대중흥7차에코누리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좌이로 150(중흥에코누리)	
17	공립 산대중흥4차에코누리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산대로 147(중흥에코누리)	
18	공립 산대중흥1차에코누리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좌이로 150(중흥에코누리)	
19	공립 산대푸른어린이집	순천시 삼천동길 20(해룡면 산대푸른어린이집)	
20	공립 용당어린이집	순천시 용당로 22(용당면 용당초등학교)	
21	공립 산대중흥10차에코누리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좌이로 150(중흥에코누리)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6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24.

1. 제정이유

- 순천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와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일자리 종합 계획 수립(안 제4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안 제5조)
 -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 순천형 맥가이버 및 공유대장간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 취업 지원 사업(안 제6조)
 - 고용지원사업
 -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중소기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등

- 일자리 영향 평가(안 제7조)
- 일자리 위원회(안 제8조 ~ 제12조)
 - 일자리 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일자리 위원회 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함.
- 행·재정적 지원(안 제13조)
 - 제5조, 제6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에 관한 사업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4. 2. ~ 4.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13.(여성가족과-819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4. 1.(기획예산실-483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1.(기획예산실-483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2.(순천시 공고 제2021-850호)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6. 순천형 맥가이버 및 공유대장간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7.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8.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4. 중소기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일자리 관련 국장급 공무원 2명
 2. 시 의회 의원 2명
 3.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 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준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제3항을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일자리 위원회가 대행한다.” 로 하고,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13조(행·재정적 지원)

-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인건비, 재료비 등 예산이 수반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69,794,042	-11,662,058	-12,711,643	-13,855,691	-15,102,703	-16,461,947
세입(a)	69,474,883	11,608,729	12,653,514	13,792,331	15,033,641	16,386,668
세출(b)	139,268,925	23,270,787	25,365,157	27,648,022	30,136,344	32,848,61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39,268,925	23,270,787	25,365,157	27,648,022	30,136,344	32,848,615
국 비	48,703,994	8,138,070	8,870,496	9,668,841	10,539,037	11,487,550
도 비	20,770,889	3,470,659	3,783,018	4,123,490	4,494,604	4,899,118
시 비	69,794,042	11,662,058	12,711,643	13,855,691	15,102,703	16,461,947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붙임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 과장

조점수(☎ 749-4403)

일자리창출팀장

신은숙(☎ 749-4403)

[붙임]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 사업명	사업 개요	
		예산액	사업 개요
합 계		23,270,787,000 국 7,956,723,000 군 181,347,000 도 3,470,659,000 시 11,662,058,000	
소 계		885,000,000 국 397,200,000 시 487,800,000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순천형 운송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	125,000,000 국 82,000,000 시 43,000,000	-예비 시내버스 운전원 맞춤교육을 통한 안전한 공공교통 운송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구축
	*울촌해룡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통근버스 임차사업	302,000,000 국 132,000,000 시 170,000,000	-중소기업 기숙사 지원을 통한 울촌해룡산업단지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울촌해룡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458,000,000 국 183,200,000 시 274,800,000	-울촌해룡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무료 통근버스 운영을 통한 고용환경개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소 계		14,557,515,000 국 5,343,029,000 도 2,919,075,000 시 6,295,411,000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1유형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 사업	1,474,069,000 국 180,147,000 도 419,894,000 시 874,02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도형 1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임금의 90%) -활동수당 월 30만원 -멘토수당 월 20만원 -4대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분기별 250만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2,996,376,000 국 1,609,622,000 시 1,386,75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도형 1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임금의 90%) -멘토수당 월 20만원 -직무교육훈련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분기별 250만원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249,180,000 국 106,313,000 시 142,86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도형 1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직무교육훈련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분기별 250만원
*청년 회사로 프로젝트	722,793,000 국 324,108,000 시 398,685,000		•지역주도형 1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멘토수당 및 직무교육훈련비
*선취업 후교육 청년 일자리	328,932,000 국 120,391,000 시 208,541,000		•지역주도형 1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직무교육훈련비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	6,653,950,000 국 2,632,500,000 도 1,794,275,000 시 2,227,175,000		•지역주도형 1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활동수당 월 30만원 -직무교육훈련비 -4대보험료 지원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	267,977,000 국 72,414,000 도 78,225,000 시 117,338,000		•지역주도형 1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직무교육훈련비 -활동 수당 월 30만원
*DNA+US기반 기업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289,375,000 국 56,719,000 도 93,062,000 시 139,594,000		•지역주도형 1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활동 수당 월 30만원 -4대보험료 지원
*스마트 제조+유망기업 2.0 프로젝트	542,658,000 국 92,330,000 도 180,131,000 시 270,197,000		•지역주도형 1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활동 수당 월 30만원 -4대보험료 지원
*에너지 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일자리사업	543,273,000 국 80,030,000 도 185,297,000 시 277,946,000		•지역주도형 1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활동 수당 월 30만원 -멘토비 월 20만원 -4대보험료 지원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488,933,000 국 68,456,000 도 168,191,000 시 252,286,000		•지역주도형 1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활동 수당 월 30만원 -4대보험료 지원

	소 계	108,000,000 국 54,000,000 시 54,000,000	
지역 주도형 -2유형	*청년 클린카 지원사업	108,000,000 국 54,000,000 시 54,000,000	•지역주도형 2유형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임차 비 등 경비 지원
	소 계	4,150,665,000 국 1,817,494,000 도 446,115,000 시 1,887,056,000	
지역 주도형 -4유형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	1,119,490,000 국 448,599,000 도 268,359,000 시 402,532,000	•지역주도형 4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활동 수당 월 30만원 -4대보험료 지원 -직무교육훈련비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 일자리사업	729,235,000 국 284,845,000 도 177,756,000 시 266,634,000	•지역주도형 4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활동 수당 월 30만원 -4대보험료 지원 -직무교육훈련비
	*E4-CITY 순천 청년 일자리사업	364,600,000 국 172,800,000 시 191,800,000	•지역주도형 4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활동 수당 월 30만원 -멘토비 월 20만원
	*청년 디지털 마케터 일자리사업	300,840,000 국 112,500,000 시 188,340,000	•지역주도형 4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4대보험료 지원
	*위드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활동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147,000,000 국 562,500,000 시 584,500,000	•지역주도형 4유형 -청년 인건비 월 200만원 (임금의 90%) -직무교육훈련비
	*순천형 뉴딜 일자리사업	489,500,000 국 236,250,000 시 253,250,000	•지역주도형 4유형 -청년 인건비 월 180만원 (임금의 90%) -멘토수당 월 20만원
	소 계	300,000,000 국 120,000,000 시 180,000,000	
순천형 맥가이버	*순천형 맥가이버 정착지원 사업	300,000,000 국 120,000,000	•2021,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정착지원 사업		시 180,000,000	
	소 계	200,000,000 국 80,000,000 시 120,000,000	
지역 동행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e-커머스마케터 양성사업	100,000,000 국 40,000,000 시 60,000,000	-온·오프라인 이커머스마케터 양성 전문 교육
	*포스트코로나 순천형 창업 지원사업	100,000,000 국 40,000,000 시 60,000,000	-지역 특성 및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소 계	1,585,763,000 시 1,585,763,000	
공공근로 사업	*공공근로 사업	1,585,763,000 시 1,585,763,000	-최저시급 적용 -4대 보험료율 연금 : 4.5% 건강 : 3.43% 장기 : 0.0395% 고용 : 1.65% 산재 : 0.899%
	소 계	362,694,000 균 181,347,000 도 36,269,000 시 145,078,000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362,694,000 균 181,347,000 도 36,269,000 시 145,078,000	-최저시급 적용 -4대 보험료율 연금 : 4.5% 건강 : 3.43% 장기 : 0.0395% 고용 : 1.65% 산재 : 0.899%
	소 계	110,000,000 국 55,000,000 시 55,000,000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110,000,000 국 55,000,000 시 55,000,000	-최저시급 적용 -4대 보험료율 연금 : 4.5% 건강 : 3.43% 장기 : 0.0395% 고용 : 1.65% 산재 : 0.899%
	소 계	658,150,000 시 658,150,000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대학졸업생 행정인턴	591,064,000 시 591,064,000	-최저시급 적용 -4대 보험료율 연금 : 4.5% 건강 : 3.43% 장기 : 0.0395% 고용 : 1.65% 산재 : 0.899%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67,086,000 시 67,086,000	-최저시급 적용 -보험료율 고용 : 1.65% 산재 : 0.899%
소 계		180,000,000 국 90,000,000 시 90,000,000	
	*지역웹툰캠퍼스 운영	180,000,000 국 90,000,000 시 90,000,000	•웹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소 계		173,000,000 도 69,200,000 시 103,800,000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73,000,000 도 69,200,000 시 103,800,000	•연차별 차등 지원 -1년차 : 5,000,000원 -2년차 : 4,500,000원 -3년차 : 5,500,000원 -4년차 : 5,000,000원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6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24.

1. 개정이유

-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자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인 4차 산업, 정보통신업 등을 전략산업에 추가
- 투자유치 활동의 제약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 신설로 맞춤형 유치 활동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2. 주요내용

-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신설(안 제5조의2)
- 신설되는 조항 추가 개정(안 제9조)
-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신설(안 제10조의3)
- 「별표」의 바이오산업란 다음에 4차산업란 및 정보통신업란을 신설하고, 기타산업란 다음에 기타란을 신설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6. 4. 30. ~ 5.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5. 11.(여성가족과-1030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29.(기획예산실-637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30.(순천시 공고 제2021-1081호)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① 시장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과급효과가 큰 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국내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그 밖에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한 경우
 2.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
 3. 국내투자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4.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제1호 중 “제5조” 를 “제5조, 제5조의2, 제10조의3” 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시 소유의 재산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바이오산업란 다음에 4차산업란 및 정보통신업란을 각각 신설하고, 기타 산업란 다음에 기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핵심기술로 하는 초연결성, 초지능화 기반의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융복합, 인공지능, 항공 우주산업,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사물 인터넷(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차 등,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정보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58 ~ 69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① 시장은 미래성장가능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과급효과가 큰 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국내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한 경우 2.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 3. 국내투자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4.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토지· 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p>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
2. ~ 6. (생략)

<신설>

「별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제3조제2항과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

1. ----- 제5조, 제5조의2, 제10조의3

2.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시 소유의 재산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제3조제2항과 관련)

산업명	적용 산업 내용	비고
제조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0 ~ 33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투자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고시된 산업분류번호 외국인학교(85420), 국제학교 ○ 외국인병원	
연구소 연구개발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70111~70209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체	
대고객 서비스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외국인 투자 제외)	
국내투자 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 -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국내 의료기관	
지식정보 문화산업	○ 지식·정보·문화를 활용하여 제조·생산시설 없이 사무실과 인력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ICT 관련 업체 -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 업체 -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문화형 콘텐츠 업체 등	
바이오산업	○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 유전자 재조합 기술 -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 기술 - 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 식품기자재, 유통, 농수산물 가공업체	
기타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 - 동식물원(90231), 박물관(90221), 도서관(90211) - 골프장시설산업(91121) : 골프장(규모 18홀이상 시설)	

산업명	적용 산업 내용	비고
제조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0 ~ 33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투자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고시된 산업분류번호 외국인학교(85420), 국제학교 ○ 외국인병원	
연구소 연구개발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70111~70209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체	
대고객 서비스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외국인 투자 제외)	
국내투자 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 -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국내 의료기관	
지식정보 문화산업	○ 지식·정보·문화를 활용하여 제조·생산시설 없이 사무실과 인력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ICT 관련 업체 -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 업체 -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문화형 콘텐츠 업체 등	
바이오산업	○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 유전자 재조합 기술 -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 기술 - 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 식품기자재, 유통, 농수산물 가공업체	
4차산업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핵심기술로 하는 초연결성, 초지능화 기반의 산업 - ICT융합, 인공지능, 항공 우주산업,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사물 인터넷(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차 등,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정보통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58 ~ 69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기타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 - 동식물원(90231), 박물관(90221), 도서관(90211) - 골프장시설산업(91121) : 골프장(규모 18홀이상 시설)	
기타	○ 상기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6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24.

1. 개정이유

- 신규 생활문화시설(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 조항 및 자체운영규정 제정 신설 등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시설 사용 신청기간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2조~제4조)
-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10조)
- 생활문화시설(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추가(별표 1,2 / 별지 제1,2호 서식)
- 자체운영규정 제정 조항 신설(안 제16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4. 15. ~ 5. 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7.(여성가족과-7749)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3. 18.(문화예술과-4470)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31.(기획예산실-4759)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14.(순천시 공고 제2021-956호)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를 “시설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사용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한다” 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 등 면제)” 를 “(사용료 감면)”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감경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감경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자체운영규정) 운영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창작예술촌란 중 “김혜순한복공방(창작예술촌2호)” 를 “창작예술촌 2호(김혜순한복공방)” 으로, “조강훈아트스튜디오(창작예술촌3호)” 를 “창작 예술촌3호(조강훈아트스튜디오)” 로, “장안창작마당(창작예술촌4호)” 을 “창

작예술훈4호(장안창작마당)” 으로 한다.

별표 1 서문안내소란 중 “다목적실, 마을방송국,안내소, 작은도서관, 유아놀이방” 을 삭제하고, 한옥글방 다음에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순천시 영동 8번지	
---------------	------------	--

별표 2 한옥글방란 다음에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전 시 실	1일	10,000원	좌 동
	다 목 적 강 의 실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광 장	-	무 료	좌 동

별지 제1호서식 시설명란에 “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전시실)”, “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다목적강의실)”, “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광장)” 을 각각 신설하고, 신청내용란 다음에 감면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 면 내 용	감면신청액	
	감면사유	

별지 제1호서식 중 “제6조제1항” 을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시설명란에 “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전시실)”, “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다목적강의실)”, “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광장)” 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신설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u>별지 제1호</u>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 략)</p> <p>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u>한다</u>.</p> <p>제10조(사용료 등 면제) (생 략)</p> <p><신 설></p>	<p>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 ----- ----- ---- <u>시설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u>. <u>다</u>만, <u>시설사용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u>.</p> <p>제10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감경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순천시부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u> 2. <u>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u> 3. 「<u>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u> 4.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u>장애</u>

<신 설>

<신 설>

제16조 · 제17조 (생 략)

[별표 1]

생활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창작예술촌	창작예술촌1호	순천시 옥천길 19(영동)
	김혜순한복공방 (창작예술촌2호)	순천시 옥천길 20(영동)
	조강훈아트 스튜디오 (창작예술촌3호)	순천시 금곡길 22(행동)
	장안창작마당 (창작예술촌4호)	순천시 금곡길 43(금곡동)
서문안내소	다목적실, 마을방종국, 안내소, 작은도서관, 유아놀이방	순천시 호남길 52(행동)
한 옥 글 방	순천시 금곡길 28(행동)	
<신 설>		

[별표 2]

생활문화시설의 사용료(제9조 관련)

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감경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운영규정) 운영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 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별표 1]

생활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창작예술촌	창작예술촌1호	순천시 옥천길 19(영동)
	창작예술촌2호 (김혜순한복공방)	순천시 옥천길 20(영동)
	창작예술촌3호 (조강훈아트 스튜디오)	순천시 금곡길 22(행동)
	창작예술촌4호 (장안창작마당)	순천시 금곡길 43(금곡동)
서문안내소	순천시 호남길 52(행동)	
한 옥 글 방	순천시 금곡길 28(행동)	
순천부 음성 남문터 광장	순천시 영동 8번지	

[별표 2]

생활문화시설의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주 말	
창작예술촌 1호	전시실	1일	10,000원	좌 동	
창작예술촌 2호 (김혜순 한복공방)	전시실	1일	10,000원	좌 동	
창작예술촌 3호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	전시실	1일	10,000원	좌 동	
창작예술촌 4호 (장안창작 마당)	다목적실 (공유부엌)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장안 여인숙	1일 숙박	10,000원	좌 동	
서 문 안 내 소	다목적실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한옥글방	회의실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구 분	시 설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주 말	
창작예술촌 1호	전시실	1일	10,000원	좌 동	
창작예술촌 2호 (김혜순 한복공방)	전시실	1일	10,000원	좌 동	
창작예술촌 3호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	전시실	1일	10,000원	좌 동	
창작예술촌 4호 (장안창작 마당)	다목적실 (공유부엌)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장안 여인숙	1일 숙박	10,000원	좌 동	
서 문 안 내 소	다목적실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한옥글방	회의실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순천부 음성 남문터 광장	전시실	1일	10,000원	좌 동	
	다 목 적 강 의 실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광 장	-	-	무료	좌 동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시 설 명	<input type="checkbox"/> 창작예술촌1호 <input type="checkbox"/> 창작예술촌2호(김혜순한복공방) <input type="checkbox"/> 창작예술촌3호(조강훈아트스튜디오) <input type="checkbox"/>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input type="checkbox"/> 서문안내소 다목적실 <input type="checkbox"/> 한옥글방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신 설>		
	단 체 명		연 락 처
신 청 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변경 신청 사항	시 설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간)	
	변경신청	변경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			
기 타 서 류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시 설 명	<input type="checkbox"/> 창작예술촌1호 <input type="checkbox"/> 창작예술촌2호(김혜순한복공방) <input type="checkbox"/> 창작예술촌3호(조강훈아트스튜디오) <input type="checkbox"/>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input type="checkbox"/> 서문안내소 다목적실 <input type="checkbox"/> 한옥글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전시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다목적강의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광장)		
	단 체 명		연 락 처
신 청 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변경 신청 사항	시 설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간)	
	변경신청	변경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			
기 타 서 류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의 준공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1,732,500	-346,500	-346,500	-346,500	-346,500	-346,500
세입(a)	17,500	3,500	3,500	3,500	3,500	3,500
세출(b)	1,7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1,7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7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관리 운영
- 사업기간 : 2022년
- 산출액(2022년) : 350,000천원
- 산출근거(2022년)
 - 사업비 : 170,000천원
 - 노무비 : 110,000천원
 - 경비 : 6,000천원
 - 제세비 : 64,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과장 신순옥(☎ 749-6788)
- 문화예술팀장 이선화(☎ 749-6789)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6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24.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2020년 감사원 대행 감사결과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른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 분야’ 조치대상으로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5조)
-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8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4. 15. ~ 5. 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19.(여성가족과-8588)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31.(기획예산실-4759)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14.(순천시 공고 제2021-956호)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3월말” 을 “2월말” 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u>기타</u>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5조(정관)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그 밖에</u>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u>3월말</u>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결산서 제출) ① ----- ----- ----- ----- <u>2월말</u>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삭제>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6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24.

1. 개정이유

-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임의적용으로 혼선을 초래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항 수정

2. 주요내용

- ‘예술인’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5항)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예술인복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6. 6. 14. ~ 7. 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7.(여성가족과-7750)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31.(기획예산실-4759)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14.(순천시 공고 제2021-956호)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예술인”이란 사단법인 한국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소속단체의 회원으로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p>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7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24.

1. 개정이유

-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이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 및 통합 조정
-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불부합한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 근거 마련
 - 명칭 및 위치(별표 1) / 사용료 및 이용료(별표 2)
-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 통합 정비
 - 명칭 및 위치(별표 1) / 사용료 및 이용료(별표 2)
- 체육시설 사용 권리 양도 금지 위반 제재 규정 마련(제15조제2항 신설)
 - 사용 허가로 부여받은 권리양도 금지 조항 위반 시 일정 기간 시설사용 제한
- 부대시설 사용료 중 냉·난방비 감면 규정 신설
 - 시 및 시의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체육행사는 냉·난방비 전액 감면
- 인용한 상위 법령 등의 명칭 및 불부합한 자구 수정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 관련부서 의견 :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4. 15. ~ 5. 6.) 결과 : 의견 1건

- 단 체 명 : 순천시 체육회
- 내 용 : 별표 2 전용기본사용료 중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시간 기준 변경 요구
(주간 1회 4시간 → 주간 1회 1시간)
- 부서의견 : 일부 수용(개선안 : 주간 1회 2시간 / 사유 : 타자자체 사례 등 파악하여 현실화)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28.(여성가족과-9306호)
 - 검토의견 : 성별고정관념에 해당하는 항목 개선

대상 항목	사 유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2항제13호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임여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여성은 출산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고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가임여성'이라는 용어는 지양해야 함

- 부서의견 : 수용 / 개선안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14.(기획예산실-561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15.(순천시 공고 제2021-968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을 “건립하여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 이란 그에 부속된” 으로 하고, 제2호 나목 중 “이하의” 를 “이하인” 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을 “중·고등학생” 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6. “국민체육센터” 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시설로서 생활체육의 보급 및 체육진흥 육성사업,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허가)” 를 “(사용 등의 허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용하려면” 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할 때에도 또한”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시간)” 을 “(사용 및 이용시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시간” 을 “사용 및 이용시간”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초·중·고·대학” 을 “초·중·고, 대학” 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제2항제2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만65세”

를 “65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임여성” 을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자의 설비)” 를 “(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할 때에는 미리” 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규모				
			부지면적	경기장면적	건물면적	주요시설	
팔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팔마로 333 (연향동)	31,470㎡	21,490㎡	5,659㎡	천연잔디구장 1면, 트랙 400m/8레인, 좌석수 12,703석	
	보조경기장		23,160㎡	15,259㎡	88.2㎡	인조잔디 1면, 트랙 400m/4레인, 좌석수 204석, 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740㎡	364㎡	522.36㎡	복싱장 1층, 유도장 2층	
	양궁장		3,846㎡	1,653㎡	312.54㎡	좌석수 8석	
	팔마소프트테니스장		7,509㎡	4,600㎡	252.72㎡	클레이코트 6면, 좌석수 670석	
	팔마테니스장		12,000㎡	7,330㎡	272.19㎡	하드코트 10면, 조명시설, 좌석수 392석, 중계실	
생활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		12,482㎡	6,375㎡	6,594㎡	하드코트 8면, 조명시설	
	게이트볼		2,706㎡	2,706㎡	1,171.25㎡	인조잔디 2면	
	족구장		3,439㎡	3,439㎡	-	인조구장 5면, 조명시설	
	씨름장		1,050㎡	411.06㎡	86.64㎡	씨름장, 사무실	
국민체육센터				5,916㎡	-	3,592㎡	체육관, 탁구장,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사무실
팔마국궁장				6,395㎡	5,049㎡	484.94㎡	사대수 28개
팔마인공암벽장				1,610㎡	-	212.4㎡	암벽장 1동(높이 19.35m)
팔마야구장				24,073㎡	13,000㎡	992.45㎡	인조잔디 1면
팔마실내야구연습장					-	630㎡	실내야구연습장 1면
팔마유소년축구장				12,780㎡	12,150㎡	302.4㎡	인조잔디 2면, 좌석수 78석
팔마장애인 론볼구장				3,276㎡	1,800㎡	118.8㎡	9링크(50*56m)
팔마 X-게임장				406㎡	406㎡	-	X-게임장 1면
팔마체육관				14,010㎡	1,608㎡	6,483.18㎡	좌석수 3,576석, 전광판, 음향시설, 기계실, 부속실 16개소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12,539㎡	1,260㎡	7,254㎡	수영장 25m/7레인,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체육관, 교육장, 배드민턴장 6면, 기계실, 사무실
팔마골프연습장			3,907㎡	3,003.04㎡	903.96㎡	26타석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환선로 133 (석현동)	10,678㎡	843.48㎡	3,549.63㎡	수영장 25m/6레인, 체력단련실, 사무실, 기계실	
상사경기장		상사초등길 34	23,481㎡	11,282㎡	-	인조잔디 1면, 풋살장 3면, 좌석수 444석	
상사호야구장		상사면 구계길 54	46,390㎡	12,816㎡	-	제1구장 4,910㎡ 1면(리틀) 제2구장 7,906㎡ 1면(성인)	
조곡생활체육공원		자경1길 6 (조곡동)	17,931㎡	8,114㎡	353㎡	관리사/축구장 1면, 시각장애인 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다목적경기장 1면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연향동 814-25	51,754㎡	29,795㎡	43㎡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인라인장 1면, 주차장 1식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해룡면 매안로 138	15,619.10㎡	-	3,185.73㎡	수영장(25m/8레인, 15m/2레인), 다목적체육실 2실, 풋살경기장, 사무실	
신대 스포츠센터					3,455.22㎡	체력단련실, 체육교육실 4실, 프로그램실 2실, 세미나실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팔마주경기장육상트랙	주간 1일	34,000	54,000	108,000	162,000
팔마주경기장 필드	주간 1회 3시간	150,000	200,000	300,000	400,000
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보조경기장필드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야간 전기사용료	ㄷ	60,000	6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야간 전기사용료	ㄷ	60,000	6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	1회 3시간	30,000	50,000	-	-
야간 전기사용료	ㄷ	30,000	30,000		
상사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상사호야구장	주간 1회 3시간	20,000	40,000	70,000	100,000
상사풋살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풋살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조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팔마체육관	주간	50,000	80,000	140,000	210,000
	야간	75,000	120,000	200,000	300,000
팔마소프트테니스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7,000	-	-
	야간	31,000	41,000	-	-
팔마양궁장	주간 1일	20,000	30,000	-	-
팔마족구장 (1 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팔마국궁장	3시간	20,000	30,000	-	-
팔마인공암벽장	주간 1회 1시간	10,000	15,000	-	-
팔마야구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팔마실내야구연습장	주간 1회 2시간	20,000	30,000	-	-
팔마유소년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40,000	60,000	100,000	150,000
팔마장애인론볼구장	주간	20,000	30,000	-	-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주간 1회 2시간	20,000	20,000	30,000	30,000

※ 주경기장 필드는 1일 1회 초과 사용 불가

※ 조곡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각장애인 외의 사용자에게 해당

※ 유소년축구장을 일반축구장으로 사용 시 팔마보조경기장과 동일하게 사용료 적용

※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이용 및 연습 시 기본사용료(현행과 같음)

○ 교육장 및 세미나실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올림픽기념관 교육장		1시간	20,000원
신 대 스포츠센터	체육교육실	1시간	5,000원
	세 미 나 실	2시간	15,000원

※ 교육장 및 세미나실 사용 시간은 09:00~18:00로 한다.

○ 상업사용료(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용료) (현행과 같음)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방송시설 (앰프 및 마이크 등)	교육장, 소프트 테니스장	1일1회	14,000	
	기타시설	〃	40,000	
전 광 관		〃	기본료(40,000) · 월기본요금/30 · 실제사용료	스코어판 포함
일반전기 (조명)	기 념 관	〃	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부가세	무대조명시 기타시설 사용료 적용 -기본료:월기본료×1/30×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용량 +요금단가
	기타시설	〃	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부가세	-기본료:월기본료×1/30×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용량 +요금단가
냉 · 난방	기 념 관	〃	· 냉방 - 기본료(20,000)+실제 전기사용 요금 +부가세	※ 시 및 의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체육행사는 전액 감면
	팔마체육관	〃	· 난방 - 기본료(20,000)+실제 유류 사용 요금 +부가세	
	국민체육센터	〃	사용료의 30% 가산	
라 이 트		〃	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부가세	
운동기구		〃	14,000	배구, 배드민턴 네트 및 지주대 세트
공공용지		3.3㎡당	7,000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단 1회 사용은 10일 이내로 하며 초과분에 한하여 1일 10% 추가징수)

다. 프로그램 이용료

프 로 그 램		기 준	이용료(강습)	자유이용	일일이용	비 고
수 영 장	일 반	1개월	66,000원(월, 수, 금)	54,000원	3,000원	올림피아 기념관, 문 화 건강 센 터, 신 대 유·청소년 수영장
			62,000원(화, 목)			
	청소년, 군 인	1개월	52,000원(월, 수, 금)	40,000원	2,000원	
			48,000원(화, 목)			
	어 린 이	1개월	42,000원(월, 수, 금)	30,000원	1,500원	
			38,000원(화, 목)			
경 로	1개월	해당없음	15,000원	1,500원		
아쿠아로빅		1개월	66,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올 림 피 기 념 관	에 어 로 빅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요 가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어린이축구		1개월	4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복 상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소년, 군 인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 린 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유 도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 소 년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 린 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배 드민턴	일 반 인	1개월	45,000원	30,000원	1,500원
		청소년, 군 인	1개월	40,000원	20,000원	1,000원
		어 린 이	1개월	34,000원	14,000원	700원
문 화 건 강 센 터	체 력 단 련 실	일 반, 청소년	1개월	해당없음	30,000원	2,000원

프로그램		기 준	이용료(강습)	자유이용	일일이용	비 고
신 대 유 · 청 소 년 수 영 장 스 포 츠 센 터	요 가, 필라테스	일 반	1개월	54,000원(주3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36,000원(주2회)		
		경로	1개월	27,000원(주3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18,000원(주2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이어트 댄스, 라인댄스, 줌바댄스, K-POP댄스, 스포츠댄스, 짐스틱 등	일 반	1개월	54,000원(주3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36,000원(주2회)		
		경로	1개월	27,000원(주3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18,000원(주2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어린이 프로그램		1개월	30,000원(주2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체력 단련실		1개월	해당없음	50,000원	3,000원
국 민 체 육 센 터	배드민턴	일 반	1개월	100,000원	30,000원	3,000원
		청소년	1개월	70,000원	20,000원	2,000원
		어린이	1개월	50,000원	15,000원	1,500원
	탁 구	일 반	1개월	100,000원	40,000원	4,000원
		청소년	1개월	70,000원	30,000원	3,000원
		어린이	1개월	50,000원	20,000원	2,000원
	택 견	일 반	1개월	5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청소년	1개월			
		어린이	1개월			
	체력단련장(헬스장)		1개월	해당없음	20,000원	2,000원
필라테스 라인댄스 줌바댄스 방송댄스 등		1개월	20,000원~6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령대, 이용 횟수, 수준 등 에 따라 요금 차등 적용
비고						
1. 유아는 어깨 높이 90cm 이상 수영장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2.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할인율)	비 고
사 용 료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시 대표로 등록된 선수의 훈련	80%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순천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80%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80%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80%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 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0%	천연잔디 구장은 제외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8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12.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 학습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0%	
	13.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	50%	
	14. 축구장의 조간사용	50%	천연잔디구장, 토·일 공휴일 제외
이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구 분		감 면 율 (할인율)	비 고
용 료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u>단체설립</u>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u>단체설립</u>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2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50%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50%	
	24. <u>65세</u>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0%	
	2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50%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자
	2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0%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희망자
	27. <u>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u>	10%	수영장 월 이용자에 한정하여 감면하거나 5일 연장
	28. 수영·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30%	
	29.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 운영	50%	협조 공문 제시
30. 장기 이용회원		15%	3개월
		20%	6개월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이용료 감면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적용한다.(단, 15호 ~ 24호, 30호는 제외)

※ 단 25호는 2020. 7. 1.이후 출생한 둘째자녀를 둔 사람부터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체육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u>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u></p> <p>2. “이용자”란 체력단련,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u>이하의 사람</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u>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마.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바. <u>군인 : 현역병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의무경찰순경, 경비교도원, 의무소방원 등</u></p> <p>3. ~ 5.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 <u>건립하여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u></p> <p>2.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 <u>이하인</u> -----</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 <u>중·고등학생</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마.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바. <u>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지무원 등</u></p> <p>3. ~ 5. (현행과 같음)</p> <p>6. “국민체육센터”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시설로서 생활체육의 보급 및 체육진흥</p>

육성사업,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제외한다.

7. ~ 8. (생략)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10. ~ 15.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5조(사용 등의 허가) 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
-----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 및 이용시간) ----- 사용 및 이용시간-----.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초·중·고, 대학-----
-----.

7. ~ 8. (현행과 같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0. ~ 15. (현행과 같음)

②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생략)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 9. (생략)
10.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
등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11.~12. (생략)
13.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임여성

14. ~ 17. (생략)

③ (생략)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
료의 반환, 배상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2. (생략)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

1. (현행과 같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
-----.
4. (현행과 같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6. ~ 9. (현행과 같음)
10. 65세-----

- 11.~12. (현행과 같음)
13.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4. ~ 1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전염병, 화재 등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③ (생략)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생략)

<신설>

제16조(체육시설의 위탁) ①·② (생략)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부설주차장 운영)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4와 같다.

---- 그 밖에-----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부설주차장 운영) -----
-----필요한-----

-----.

현 행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규 모			
		부지면적	경기장면적	건물연면적	주요시설
팔마종합체육관	주경기장	31,470㎡	21,490㎡	5,659㎡	천연잔디구장 1면, 트랙 400m/8레인, 좌석수 12,703석
	보조경기장	23,160㎡	15,259㎡	-	인조잔디 1면, 좌석수 204석, 트랙 400m/4레인
	다목적체육관	740㎡	364㎡	522.36㎡	복싱장 1층, 유도장 2층
	양궁장	3,846㎡	1,653㎡	312.54㎡	좌석수 8석
	팔마소프트테니스장	7,509㎡	4,600㎡	252.72㎡	클레이코트 6면, 좌석수 670석
	팔마테니스장	12,000㎡	7,330㎡	191.34㎡	하드코트 10면, 조명시설, 좌석수 392석
	실내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	12,482㎡	6,375㎡	6,594㎡	하드코트 8면, 조명시설
	게이트볼	2,706㎡	2,706㎡	1,171.25㎡	인조잔디 2면
족구장	3,439㎡	3,439㎡	-	인조구장 5면, 조명시설	
씨름장	1,050㎡	411.06㎡	86.64㎡	씨름장, 사무실	
<신설>	팔마로 333 (연향동)	<신설>			
팔마국공장		6,395㎡	5,049㎡	484.94㎡	사대수 28개
팔마인공암벽장		1,610㎡	-	212.4㎡	암벽장 1동(높이 19.35m)
팔마야구장			13,000㎡	992.45㎡	인조잔디 1면
팔마실내야구연습장		24,073㎡	-	630㎡	실내야구연습장 1면
팔마유소년축구장		12,780㎡	12,150㎡	302.4㎡	인조잔디 2면, 관람석 78석
팔마장애인론볼구장		3,276㎡	1,800㎡	118.8㎡	9링크(50*56m)
팔마X-게임장		406㎡	406㎡	-	X-게임장 1면
팔마체육관		14,010㎡	1,608㎡	6,483.18㎡	좌석수 3,576석, 전광판, 음향시설, 기계실, 부속실 16개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2,539㎡	1,260㎡	7,254㎡	수영장 25m/7레인, 체력단련실, 탁구장, 에어로비실, 체육관, 배드민턴장 6면, 기계실, 교육장, 사무실
팔마골프연습장		3,907㎡	3,003.04㎡	903.96㎡	26타석
문화건강센터수영장	환선로 133 (석현동)	10,678㎡	843.48㎡	3,549.63㎡	수영장 25m/6레인, 체력단련실, 사무실, 기계실
상사경기장	상사초등학교길 34	23,481㎡	11,282㎡	-	인조잔디 1면, 풋살장 3면, 좌석수 444석
상사호야구장	상사면구계길 54	46,390㎡	12,816㎡	-	제1구장 4,910㎡ 1면(리틀), 제2구장 7,906㎡ 1면(성인)
조곡생활체육공원	자경길 6 (조곡동)	17,931㎡	8,114㎡	353㎡	관리사/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시각장애인족구장 1면, 다목적경기장 1면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연향동 814-25	51,754㎡	29,795㎡	43㎡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인라인장 1면, 주차장 1식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개정안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규 모			
		부지면적	경기장면적	건물연면적	주요시설
팔마종합체육관	주경기장	31,470㎡	21,490㎡	5,659㎡	천연잔디구장 1면, 트랙 400m/8레인, 좌석수 12,703석
	보조경기장	23,160㎡	15,259㎡	88.2㎡	인조잔디 1면, 좌석수 204석, 트랙 400m/4레인, 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740㎡	364㎡	522.36㎡	복싱장 1층, 유도장 2층
	양궁장	3,846㎡	1,653㎡	312.54㎡	좌석수 8석
	팔마소프트테니스장	7,509㎡	4,600㎡	252.72㎡	클레이코트 6면, 좌석수 670석
	팔마테니스장	12,000㎡	7,330㎡	272.19㎡	하드코트 10면, 조명시설, 좌석수 392석, 중계실
	실내테니스장, 소프트테니스장	12,482㎡	6,375㎡	6,594㎡	하드코트 8면, 조명시설
	게이트볼	2,706㎡	2,706㎡	1,171.25㎡	인조잔디 2면
족구장	3,439㎡	3,439㎡	-	인조구장 5면, 조명시설	
씨름장	1,050㎡	411.06㎡	86.64㎡	씨름장, 사무실	
국민체육센터	팔마로 333 (연향동)	5,916㎡	-	3,592㎡	체육관, 탁구장,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사무실
팔마국공장		6,395㎡	5,049㎡	484.94㎡	사대수 28개
팔마인공암벽장		1,610㎡	-	212.4㎡	암벽장 1동(높이 19.35m)
팔마야구장			13,000㎡	992.45㎡	인조잔디 1면
팔마실내야구연습장		24,073㎡	-	630㎡	실내야구연습장 1면
팔마유소년축구장		12,780㎡	12,150㎡	302.4㎡	인조잔디 2면, 좌석수 78석
팔마장애인론볼구장		3,276㎡	1,800㎡	118.8㎡	9링크(50*56m)
팔마X-게임장		406㎡	406㎡	-	X-게임장 1면
팔마체육관		14,010㎡	1,608㎡	6,483.18㎡	좌석수 3,576석, 전광판, 음향시설, 기계실, 부속실 16개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2,539㎡	1,260㎡	7,254㎡	수영장 25m/7레인, 체력단련실, 에어로비실, 체육관, 배드민턴장 6면, 기계실, 교육장, 사무실
팔마골프연습장		3,907㎡	3,003.04㎡	903.96㎡	26타석
문화건강센터수영장	환선로 133 (석현동)	10,678㎡	843.48㎡	3,549.63㎡	수영장 25m/6레인, 체력단련실, 사무실, 기계실
상사경기장	상사초등학교길 34	23,481㎡	11,282㎡	-	인조잔디 1면, 풋살장 3면, 좌석수 444석
상사호야구장	상사면구계길 54	46,390㎡	12,816㎡	-	제1구장 4,910㎡ 1면(리틀), 제2구장 7,906㎡ 1면(성인)
조곡생활체육공원	자경길 6 (조곡동)	17,931㎡	8,114㎡	353㎡	관리사/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시각장애인족구장 1면, 다목적경기장 1면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연향동 814-25	51,754㎡	29,795㎡	43㎡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인라인장 1면, 주차장 1식
신대유·청소년수영장	해룡면 매안로 138	5,689.10㎡	-	3,185.73㎡	수영장(25m/8레인, 15m/7레인), 다목적체육실 2실, 풋살경기장, 사무실
신대스포츠센터				3,455.22㎡	체력단련실, 체육교육실 4실, 프로그램실 2실, 세미나실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 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공 휴일	평 일	토·공 휴일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4,000	54,000	108,000	162,000
팔마주경기장필드	주간1회 3시간	150,000	200,000	300,000	400,000
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보조 경기장필드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야간 전기사용료	〃	60,000	60,000		
국가정원 스포츠 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야간 전기사용료	〃	60,000	60,000		
국가정원 스포츠 센터 풋살장	1회 3시간	30,000	50,000	-	-
야간 전기사용료	〃	30,000	30,000		
상사경기장	주간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상사호야구장	주간1회 3시간	20,000	40,000	70,000	100,000
상사풋살경기장	주간1회 3시간	30,000	50,000	-	-
	<신 설>				
조곡생활체육 공원 축구장	주간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주간1회 3시간	30,000	50,000	-	-
팔마체육관	주간	50,000	80,000	140,000	210,000
	야간	75,000	120,000	200,000	300,000
팔마소프트테니스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7,000	-	-
	야간	31,000	41,000	-	-
팔마양궁장	주간 1일	20,000	30,000	-	-
팔마족구장 (1 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팔마국궁장	3시간	20,000	30,000	-	-
팔마인공암벽장	주간1회 1시간	10,000	15,000	-	-
팔마야구장	주간1회 3시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팔마실내 야구연습장	주간1회 2시간	20,000	30,000	-	-
팔마유소년축구장	주간1회 3시간	40,000	60,000	100,000	150,000
팔마장애인론볼구장	주간	20,000	30,000	-	-
	<신 설>				

- ※ 주경기장 필드는 1일 1회 초과 사용 불가
- ※ 조곡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각장애인 외의 사용자에게 해당
- ※ 유소년축구장을 일반축구장으로 사용 시 팔마보조경기장과 동일하게 사용료 적용
- ※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 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공 휴일	평 일	토·공 휴일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4,000	54,000	108,000	162,000
팔마주경기장필드	주간1회 3시간	150,000	200,000	300,000	400,000
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보조 경기장필드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야간 전기사용료	〃	60,000	60,000		
국가정원 스포츠 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야간 전기사용료	〃	60,000	60,000		
국가정원 스포츠 센터 풋살장	1회 3시간	30,000	50,000	-	-
야간 전기사용료	〃	30,000	30,000		
상사경기장	주간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상사호야구장	주간1회 3시간	20,000	40,000	70,000	100,000
상사풋살경기장	주간1회 3시간	30,000	50,000	-	-
신대 유·청소년 수영장 풋살경기장	주간1회 3시간	30,000	50,000	=	=
조곡생활체육 공원 축구장	주간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주간1회 3시간	30,000	50,000	-	-
팔마체육관	주간	50,000	80,000	140,000	210,000
	야간	75,000	120,000	200,000	300,000
팔마소프트테니스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7,000	-	-
	야간	31,000	41,000	-	-
팔마양궁장	주간 1일	20,000	30,000	-	-
팔마족구장 (1 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팔마국궁장	3시간	20,000	30,000	-	-
팔마인공암벽장	주간1회 1시간	10,000	15,000	-	-
팔마야구장	주간1회 3시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팔마실내 야구연습장	주간1회 2시간	20,000	30,000	-	-
팔마유소년축구장	주간1회 3시간	40,000	60,000	100,000	150,000
팔마장애인론볼구장	주간	20,000	30,000	-	-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주간1회 2시간	20,000	20,000	30,000	30,000

- ※ 주경기장 필드는 1일 1회 초과 사용 불가
- ※ 조곡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각장애인 외의 사용자에게 해당
- ※ 유소년축구장을 일반축구장으로 사용 시 팔마보조경기장과 동일하게 사용료 적용
- ※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생략)

○ 교육장

용도	기준	사용료
교육	1시간	20,000원
	< 신 설 >	
	< 신 설 >	

※ (신설)

○ 상업사용료 (생략)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별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방 송 시설 (앰프 및 마이크 등)	교육장 · 소프트 테니스장	1일 1회	14,000	
	기타 시설	〃	40,000	
전광판	〃	기본료(40,000) · 월 기본요금/30 · 실제 사용료	스코어판 포함	
일반 전 기 (조명)	기념관	〃	기본료 +실제 사용한 전기료 +부가세	무대조명 시 기타시설 사용료 적용 -기본료: 월기본료×1/30 ×사용일 -실제 사용한 전기료 : 전기 사용량 +요금 단가
	기타 시설	〃	기본료 +실제 사용한 전기료 +부가세	-기본료:월기 본료×1/30× 사용일 -실제 사용한 전기료: 전기 사용량+요금 단가
냉 · 난방	기념관	〃	• 냉방 :기본료(20,000) +실제 전기 사용요금 +부가세	<신 설>
	팔 마 체육관	〃	• 난방 :기본료(20,000) +실제 유류 사용요금 +부가세	
	<신 설>	〃	설>	
라이트	〃	기본료 +실제 사용한 전기료 +부가세		
운동기구	〃	14,000	배구, 배드민턴 네트 및 자주대 세트	
공공용지	3.3 ㎡ 당	7,000	상행위를 목 적으로 할 때 (단 1회 사용은 10일 이내로 하며 초과분에 한하여 1일 10%추가징수)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현행과 같음)

○ 교육장 및 세미나실

구분	기준	사용료	
올림픽기념관 교육장	1시간	20,000원	
신 대 스포츠센터	체육교육실	1시간	5,000원
	세미나실	2시간	15,000원

※교육장 및 세미나실의 사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 상업사용료 (현행과 같음)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별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방 송 시설 (앰프 및 마이크 등)	교육장 · 소프트 테니스장	1일 1회	14,000	
	기타 시설	〃	40,000	
전광판	〃	기본료(40,000) · 월 기본요금/30 · 실제 사용료	스코어판 포함	
일반 전 기 (조명)	기념관	〃	기본료 +실제 사용한 전기 료 +부가세	무대조명 시 기타시설 사용료 적용 -기본료: 월기본료×1/30 ×사용일 -실제 사용한 전기료 : 전기 사용량 +요금 단가
	기타 시설	〃	기본료 +실제 사용한 전기 료 +부가세	-기본료:월기 본료×1/30× 사용일 -실제 사용한 전기료: 전기사 용량+요금단가
냉 · 난방	기념관	〃	• 냉방 :기본료(20,000) +실제 전기 사용요금 +부가세	※ 시 및 의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체육 행사는 전액 감면
	팔 마 체육관	〃	• 난방 :기본료(20,000) +실제 유류 사용요금 +부가세	
	국민 체육 센터	〃	사용료의 30% 가산	
라이트	〃	기본료 +실제 사용한 전기료 +부가세		
운동기구	〃	14,000	배구, 배드민턴 네트 및 자주대 세트	
공공용지	3.3 ㎡ 당	7,000	상행위를 목 적으로 할 때 (단 1회 사용은 10일 이내로 하며 초과분에 한하여 1일 10%추가징수)	

다. 프로그램 이용료

프 로 그 램	기 준	이용료 (강습)	자유 이용	일일 이용	비 고		
〈신 설〉	일 반	1개월	66,000원 (월,수,금)	54,000원	3,000원	〈신설〉	
			62,000원 (화,목)				
	청소년, 군 인	1개월	52,000원 (월,수,금)	40,000원	2,000원		
			48,000원 (화,목)				
	어린이	1개월	42,000원 (월,수,금)	30,000원	1,500원		
		38,000원 (화,목)					
경 로	1개월	해당없음	15,000원	1,500원			
아쿠아로빅	1개월	66,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 설〉	에어로빅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요 가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어린이축구	1개월	4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복 싱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소년, 군 인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린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유 도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소년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린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배 드민턴	일 반	1개월	45,000원	30,000원	1,500원	
청소년, 군 인		1개월	40,000원	20,000원	1,000원		
어린이		1개월	34,000원	14,000원	700원		
〈신 설〉	체력 단련실	일 반, 청소년	1개월	해당없음	30,000원	2,000원	문화 건강 센터

다. 프로그램 이용료

프 로 그 램	기 준	이용료 (강습)	자유 이용	일일 이용	비 고		
수 영 장	일 반	1개월	66,000원 (월,수,금)	54,000원	3,000원	올림피 기념관 문 화 건 강 센 터 신 대 유·청년 수영장	
			62,000원 (화,목)				
	청소년, 군 인	1개월	52,000원 (월,수,금)	40,000원	2,000원		
			48,000원 (화,목)				
	어린이	1개월	42,000원 (월,수,금)	30,000원	1,500원		
		38,000원 (화,목)					
경 로	1개월	해당없음	15,000원	1,500원			
아쿠아로빅	1개월	66,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올 림 피 기 념 관	에어로빅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요 가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어린이축구	1개월	4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복 싱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소년, 군 인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린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유 도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소년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린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배 드민턴	일 반	1개월	45,000원	30,000원	1,500원	
청소년, 군 인		1개월	40,000원	20,000원	1,000원		
어린이		1개월	34,000원	14,000원	700원		
〈신 설〉	체력 단련실	일 반, 청소년	1개월	해당없음	30,000원	2,000원	〈삭제〉

프로그램	기준	이용료 (강습)	자유 이용	일일 이용	비 고
<신 설>					
<신 설>					
비고 1 유아는 어깨 높이 90cm 이상 수영장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2.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프로그램	기준	이용료 (강습)	자유 이용	일일 이용	비 고		
신 대 유 · 청 소 년 수 영 장 스 포 츠 센 터	요 가, 필라테스	일반	1개월 54,000원 (주3회) 36,000원 (주2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로	1개월 27,000원 (주3회) 18,000원 (주2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다이어트 댄스, 라인댄스, 줄바댄스, K-POP댄스, 스포츠댄스	일반	1개월 54,000원 (주3회) 36,000원 (주2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로	1개월 27,000원 (주3회) 18,000원 (주2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어 린 이 프 로 그 램	1개월	30,000원 (주2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체력 단련실	1개월	해당 없음	50,000원	3,000원		
	국 민 체 육 센 터	배드민턴	일반	1개월	100,000원	30,000원	3,000원
			청소년	1개월	70,000원	20,000원	2,000원
			어린이	1개월	50,000원	15,000원	1,500원
		탁 구	일 반	1개월	100,000원	40,000원	4,000원
청소년			1개월	70,000원	30,000원	3,000원	
어린이			1개월	50,000원	20,000원	2,000원	
택 건		일 반	1개월				
		청소년	1개월	50,000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어린이	1개월				
체력단련장 (헬스장)	1개월	해당 없음	20,000원	2,000원			
필라테스, 라인댄스, 줄바, 방송댄스 등	1개월	20,000원 ~ 60,000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연령대 이용 횟수, 수준 등에 따라 요금 차등 적용		
비고 1 유아는 어깨 높이 90cm 이상 수영장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2.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시 대표로 등록된 선수의 훈련	80%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순천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80%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80%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80%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0%	천연잔디 구장 제외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사 용 료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8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80%	
	12.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 학습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0%	
	13.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	50%	
	14. 축구장의 조간사용	50%	천연잔디 구장, 토·일, 공휴일 제외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시 대표로 등록된 선수의 훈련	80%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순천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80%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80%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80%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0%	천연잔디 구장 제외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사 용 료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8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12.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 학습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0%	
	13.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	50%	
	14. 축구장의 조간사용	50%	천연잔디 구장, 토·일, 공휴일 제외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16. 「 독립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19.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2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50%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24.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0%	
2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50%	
2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50%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자
	10%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확장자
27.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입여성	10%	수영장 월 이용자에 한정하여 가입하거나 5일 연장
28. 수영·배드민턴 일일 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30%	
29.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50%	협조공문 제시
	15%	3개월
30. 장기 이용회원	20%	6개월

※ (생 략)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16. 「 독립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1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2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50%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24.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0%	
2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50%	
2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50%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자
	10%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확장자
2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수영장 월 이용자에 한정하여 가입하거나 5일 연장
28. 수영·배드민턴 일일 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30%	
29.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50%	협조공문 제시
	15%	3개월
30. 장기 이용회원	20%	6개월

※ (현행과 같음)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6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24.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코자 함

2. 주요내용 : 용도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축규모 정비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변경(안 별표4)

- 현행 : 18층 이하

- 개정 : 평균 18층 이하

- ※ 평균층수의 산정 방법 명시

- 아파트 지상 연면적의 합을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 기준면적 : 각 동의 지상 연면적을 당해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변경(안 제58조)

- 현행 : 250% 이하

- 개정 : 250% 이하(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20% 이하 적용)

- 상업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정비(안 별표7~9)

- 현행 :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100%) 건축 가능

- 개정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공동주택(상업기능 10%)에 한하여 건축 허용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및 주민 의견 : 총 1건(관련부서 의견 1건)

- 관련부서 제출의견 : 총 1건

연번	제출부서	제출의견	비고
1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사업부지 내 규모·높이 등을 관계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제한을 받는 지역·지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 내 건축물 층수 및 규모 등을 제외하고 평균층수를 산정 -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는 아니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도(오피스텔 등)에 대해 주거용 외의 용도에서 제외 	미수용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 2021. 4. 29. ~ 5. 20.
- 의견제출 : 1건 (관련부서 의견 1건 - 미수용)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5. 17.(여성가족과-107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14. (기획예산실-553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29.(순천시공고 제2021-1040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이하”를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별표 4 전단의 “※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 평균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층수는 지상 연면적(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을 기준면적(각 동의 지상 연면적을 해당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7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8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9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p> <p>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u>이하</u></p> <p>5. ~ 21. (생략)</p> <p>② ~ ⑧ (생략)</p> <p>[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u>※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u></p> <p>가. ~ 더. (생략)</p>	<p>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p> <p>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5. ~ 21. (현행과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u>※ 평균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층수는 지상 연면적(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을 기준면적(각 동의 지상 연면적을 당해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u></p> <p>가. ~ 더. (현행과 같음)</p>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카. (생략)

<신 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마. (생략)

<신 설>

[별표 9]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
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
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
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
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아. (생략)

<신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
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
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7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24.

1. 제정이유

- '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 조례 등 제개정 촉구
※ 지붕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설치자에게 조례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것은 부당한 의무 부과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어
인용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 지붕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 권장 조항 삭제(안 제6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인용 법령 개정
(안 제5조제2항)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4. 15. ~ 5. 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16.(여성가족과-846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14.(기획예산실-560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15.(순천시 공고 제2021-971호)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p> <p>① (생 략)</p> <p>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 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 략)</p> <p>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p> <p>① 시장은 법 제8조, 령 제10조에 서 정한 시설 이외의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4조에 따른다.</p>	<p>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물환경보전법」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7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24.

1. 제정이유

- 지역 정원산업 활성화 및 남중권 정원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순천만가든마켓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마련
- 정원산업 관련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출자법인 설립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설립 및 법인격, 사무소에 관한 사항(안 제1~제3조)
- 명칭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출자방법 및 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지역농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제7조)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21. 4. 29. ~ 5. 20.)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27.(여성가족과-9252)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4. 16.(정원산업과-2000)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29.(기획예산실-6341)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29.(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정원산업과 공고 제 2021-9호)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법인격)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외의 개인·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수출), 정보처리 등
2. 정원수 등 판매망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3. 정원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5. 국내·외 정원용 식물, 국내·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 판매
6. 정원수 및 정원 자재 소비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7. 순천만가든마켓 관련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사업
8. 그 밖에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 범위에서 정한다.

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①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지역농가 등 지원) 회사는 정원수 등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안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50미만 범위에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만가든마켓 법인 설립시 시에서 10억 원을 출자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000,000	-1,000,000	-	-	-	-
세입(a)	0	-	-	-	-	-
세출(b)	1,000,000	1,000,000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비	1,000,000	1,000,000	-	-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출자금	1,000,000	1,000,000	-	-	-	-

○ 산출근거(2021년)

▪ (출자금) 1,000백만원 × 1식 = 1,000백만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순천만관리센터 정원산업과 과 장 최영화(☎ 749-2767)
정원산업정책팀장 김기옥(☎ 749-2780)